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602 |
|----------|------|

2024년 3월 7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5. 최기찬 의원 외 14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4. 2. 7.

다.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4년 3월 7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지속적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 또는 의원면직 등으로 근무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서는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시간(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동일한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9조 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2.14. ~ 2024.2.18.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지원해 해당 공무원들의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발의된 것임.

2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 신설(안 제29조제6항)

가. 교육지도시간 신설의 배경

- 현재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로(통계청 2023년 기준) 한국 총 합계출산율 0.78보다 낮은 저출산 심화 우려 지역으로,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주거·경제 문제 해결 외에도 육아지원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
- 교육지도시간은 이러한 저출생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에 유연근무와 육아시간(특별휴가)을 통한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단축근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현재 육아지원대상 공무원들은 육아시기별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연근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근무시간 관련 각종 육아지원 제도>

- 1) 모성보호시간 : 임신기간 중 1일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 활용¹⁾
- 2) 육아시간 : 자녀 연령 0~5세 기간 중 1일 2시간의 특별휴가를 24개월 범위에서 활용²⁾
- 3) 유연근무 :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누구든지)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활용³⁾⁴⁾
 - ※ 유연근무 중 다수의 직원들이 활용하는 시차출퇴근제도(탄력근무)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요일별로 다르게 설정 가능하며 육아·간병·원거리 출퇴근·자기계발·취미 활동 등 부서장의 사전승인 후 활용할 수 있음.
- 4) 육아휴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휴직 (단, 수당은 최대 1년 지급)

○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가 5세를 초과하는 경우 활용할 수 없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해당 시기에 활용하며 육아지원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해오고 있었음.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9조제5항.
-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9조제5항.
- 3) 유연근무의 유형으로는 주당 40시간 근무하며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출퇴근 의무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당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 재택근무·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제 등으로 구분됨(2022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4) 2022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중 [2018~2021 서울시 직원 유연근무제 참여현황]

(단위 : 명)

| 연도 | 전체 인원 | 참여율 | 참여인원 | | | |
|------------|---------------|-------------|--------------|--------------|------------|--------------------|
| | | | 계 | 시차출퇴근제 | 근무시간선택제 | 원격근무제 (재택스마트워크) |
| 18년 | 10,243 | 33.2 | 3,407 | 2,873 | 526 | 8 |
| 19년 | 11,367 | 40.3 | 4,583 | 2,756 | 1,812 | 15 |
| 20년 | 10,436 | 81.5 | 8,508 | 7,769 | 949 | 7,327 |
| 21년 | 10,615 | 65.8 | 6,983 | 4,134 | 462 | 5,223 |

※ 1회 이상 유연근무 사용자 기준이며, '20~'21년에는 한명의 직원이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를 사용하여 유형별 일부 중복 사용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23년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정부정책건의를 통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일 최대 2시간 이내 육아시간 사용가능하도록 한 것을 확대해 육아 시간 자체를 8세 이하 자녀 대상 36개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유급으로 운영 중인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⁵⁾

나. 교육지도시간 신설을 통한 육아지원 활성화

- 본 조례안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이 신설되면 기존 육아시간 활용 기회를 모두 소진한 공무원이 자녀가 6~8세인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6~8세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기에 돌입하며 새로운 유형의 돌봄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에 육아시간이나 유급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경우 무급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어⁶⁾ 공무원들은 보수 문제나 경력단절의 우려로 자녀 영유아 시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다가 6~8세 시기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육아시간(5세 미만 자녀) 사용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2023년 1년동안 총 39명이 2075회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육아시간 활용을 모두 소진한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교육지도시간을 활용한다면 연평균 50명 내외의 직원들이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정책건의 2023년도 안건번호 36-28호(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참조. (최종방문 2024.2.23.) <<https://www.gaok.or.kr/gaok/proposal/statusView.do?menuNo=200026&cid=611>>

6)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휴직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만 수당 지급이 가능함.

7)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2030 공무원과‘공감 TALK 2탄’”, 행정국 인사과, (2023.11.10.).

3 종합검토

-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의 실현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그간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을 위한 육아지원시간 확대 근거를 마련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임(범위 내에서·범위 안에서·범위 이내로 → 범위에서(○년의 범위에서)로 정비 권고).⁸⁾
-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교육지도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육아지원제도를 풍부하게 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육아지원 제도의 확대는 육아공무원에게는 경력단절 이나 경제적 부담이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조직적 측면에서도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
-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제도화에 발맞추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안을 도입하고, 그 시행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시장제출, 의안번호 1638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4일 상정·수정가결 되었음.⁹⁾

8)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증보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2023, 27면.

9) 수정 사항은 교육지도시간 사용 기간을 의안에서는 6세~8세인 기간 중 12개월 범위로 정하였으나 이를 확대해 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육아시간에 이어 교육지도시간으로 육아 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함으로써 대직자의 업무과중이나 해당 부서의 총 업무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부서에 대한 인원 조정이나 수당제도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해나갈 필요가 있겠음.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 육아시기별 맞춤형 대표유형 10)

| 육아 주기 | 다빈도 자녀 등하원(교) 시간 | 대표 근무 모델 | 세부 유형 | 근무 시간 | 기타 |
|-------------------|------------------------------------|---|---|-------|--|
| 임신 기간 | 해당없음 | 【 교통혼잡 회피형 】 주5일 10:00-17:00 근무 | • 모성보호시간 - 일2시간 | 30시간 | |
| 자녀 0~5세 (유아기) | 9:00 - 16:00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 【 오후 3시 퇴근형 (하원지원형) 】 주5일 8:00-15:00 근무 【 오후 1시 출근형 (등원지원형) 】 주5일 13:00-19:00 근무 | • 육아시간 - 일2시간, 최대 24개월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 30시간 | 필요시 긴급돌봄 유연근무 사용 (당일재택, 점심시간 연결 유연근무 등) |
| 자녀 6~8세 (초등 1,2년) | 9:00 - 13:00~14:00 (요일별 상이) | 【 오후 2시 퇴근형 (교육지원형) 】 주4일 8:00-14:00, 주1일 8:00-19:00 근무 | • 교육지도시간 - 일2시간, 최대 12개월 • 유연근무 (근무시간선택제) | 30시간 | |

| | |
|--------|--------------|
| 담당 연락처 | 02-2180-7689 |
|--------|--------------|

10)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2030 공무원과‘공감 TALK 2탄’”, 행정국 인사과, (2023.11.10.), 6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공무원에게 적용될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기간을 확대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범위를 ‘12개월’범위에서 ‘24개월’범위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8. 심사결과 : 수정 기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9명, 찬성 9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602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공무원에게 적용될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기간을 확대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범위를 ‘12개월’ 범위에서 ‘24개월’ 범위로 수정함(안 제29조제6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6항 중 “12개월” 을 “24개월”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15일 범위 안”을 “15일의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9조제6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한다.

-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15일 범위 안에서</u>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 <p>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 <u>15</u> <u>일의 범위</u>----- -----</p> |
| <p>제14조(근무시간 등) ① (생략)</p> <p>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u>범위 안에서</u>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 <p>제14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범위</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p>제27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u>범위 안에서</u>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p> | <p>제27조(병가) ① ----- ----- ----- <u>범위</u>----- ----- -----</p> |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⑦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제7항 -----

-----.

